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99

2016년 2월 25일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 외 9명
나. 발 의 일 : 2015년 11월 20일
다. 회 부 일 : 2015년 11월 24일
라. 상 정 일 : 제26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2016년 2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현찬 의원)

가. 제안 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지방계약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제1항제5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 "지방계약법")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서울시는 경쟁입찰 참가자격, 계약체결 방법, 낙찰자 결정방법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『지방계약법』 제3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 있음.[1)]

※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[2)] 서울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,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, 20억원 이상인 물품·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.

---

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
   가.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   나.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
   다.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2.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3.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)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○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발생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나, 부정당업자 책임이 경미하거나 참가자격 제한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「지방계약법(개정 '13.8.6, 시행 '14.2.7)」이 개정(제31조의2 제1항 신설)됨에 따라,[3]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도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사항을 추가하도록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금번 조례 정비는 자치법규의 법령 합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동 조례의 경우 지방계약법 개정(2013.8)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, 서울시가 관련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에 대한 파악·점검 등 행정집행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, 향후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---

3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과징금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: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(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정가격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
2.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: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　　략.

6. 토　론　요　지 : 없　　음.

7. 심　사　결　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 7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　　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　　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제5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,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.

5.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① (생략) 1. ~ 4. (생략) 5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제2조(기능) ① (생략) 1. ~ 4. (생략) **5.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** 6.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